

행정학

♡ KS
띠!行政학

<2013년(0622) 7급 행정학 해설>

- ◇ 이론과 관련 깊은 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문제가 특히 두드려져 보입니다.
- ◇ 출제분포는 1편 총론 부분은 없고, 특히 4편(인사행정론) 부분이 많은 편이며, 국가직 시험에서 유래 없이 7편(지방행정 부분)에서 비교적 출제 수가 많습니다.

| 1편(총론) | 2편(정책) | 3편(조직) | 4편(인사) | 5편(재무) | 6편(통제) | 7편(지방) |
|----------|---------|--------------|--------|---------|---------|--------|
| 2,3,4,20 | 5,11,14 | 6,8,13,15,16 | 7,19 | 1,12,18 | 9,10,17 | |

◇ 난이도 면에서는 80점 이상이면 대체로 선방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문제는 낮선 용어에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단순 이해를 넘어 구체적으로 법규 적용(7번, 18번)과 연관시켜 정확한 이해를 평가하려고 애쓴 모습에서 애매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후진기어를 넣지 마세요.. 행정학 선택은 여러 면에서 유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 ① 과정과 결과가 다 같이 쉬운 과목은 없습니다. 과정은 쓰나 열매는 단 과목이 행정학이기 때문입니다.
 - ②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해주고, 다른 과목에 시간과 점수를 넘겨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 ③ 승진 후, 중앙부처나 시(도)본청으로 진입 때 시험과목은 전적으로 행정학이기 때문입니다.
- ◇ 기본반 수강 후에는 반복적 단과심화 학습(2N2)으로써 경쟁력 있는 점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과심화학습//금요일(15:00-20:00)+토요일(09:00-17:00)=100hrs/2month

문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 규모의 경제
- 정보의 비대칭성
- X-비효율성
- 외부효과의 발생

정답③)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띠!행정학, 676)

| | | |
|-------|--|---|
| 시장 실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재의 존재 • 공유지의 비극 • 규모의 경제(비용체감) • 사회적 불평등(소득과 부) • <u>최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성(외부효과)의 문제 • 자연독점(불완전한 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
| 정부 실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목표의 설정(내부성의 존재) • 비용체증(편익과 비용의 분리) • 권력의 편재(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 • 규제수단의 비효율성 • 정치적 보상구조의 왜곡 • 지대추구(rent-seeking) 행태 • 정치인의 높은 시간 할인율(high time discount rate) 추구 •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 활동의 최저선(bottom-line)과 종결장치의 부재 • 투표의 역설과 선호강도(preference intensity) 및 번들링(bundling)의 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비효율성 •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부작용)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부활동의 독점성 •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 <u>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u> • 철의 삼각(iron triangle) • 국민의 조세착각(tax illusion)과 정부의 과잉 팽창 |

문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 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 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 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 정답①)①은 분배정책, ②는 보호적 규제정책, ③은 재분배정책, ④는 추출정책(징발)이다. (띠!행정학, 154)

문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성이 높다.
- 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성이 높다.
-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성이 높다.
-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성이 낮다.

정답④)과거 경험적으로 선례가 있었던 문제가 정책의제형성이 될 가능성성이 크다. (띠!행정학, 166)

문4. 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 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 정치의 흐름(potitical stream)
-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답①>킹던(J. W. Kingdon, 1984)은 정책의 흐름 모형을 제시하면서, 정치흐름, 정책흐름, 문제흐름의 세 가지 흐름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상호독립해서) 자신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 흘러 다니다가, 우연히 결합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띠!행정학, 252)

문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 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답③>①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위원회에 속하고, 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독립규제위원회에 속하고, ④의 경제장관회의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아니라) 수평적 협력을 위한 조정위원회에 속한다. ③의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위원회로서,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속한다. (띠!행정학, 344)

문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②>해임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 해임될 시에는 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띠!행정학, 488)

| | | 내 용 |
|-----|----|--|
| 경징계 | 견책 |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 |
|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의 직무를 보수의 1/3 감액 |
| 중징계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의 2/3 감액 |
| | 강등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 |
| | 해임 | 강제퇴직(3년간 공직임용 금지), 퇴직급여에 영향은 없으나 공급횡령이나 유용으로 해임될 시에는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 | 파면 | 강제퇴직(5년간 공직임용 금지), 퇴직금은 1/4(5년 미만 재직자) 내지 1/2(5년 이상 재직자)만 지급제한 될 수 있음, 퇴직수당은 50% 삭감 |

문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 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정답④>예결위원장이 아니라, 의장이다. 국회법 제84조 ⑥에는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딱!행정학, 556~559)**

-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자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함에 있어서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 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삽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문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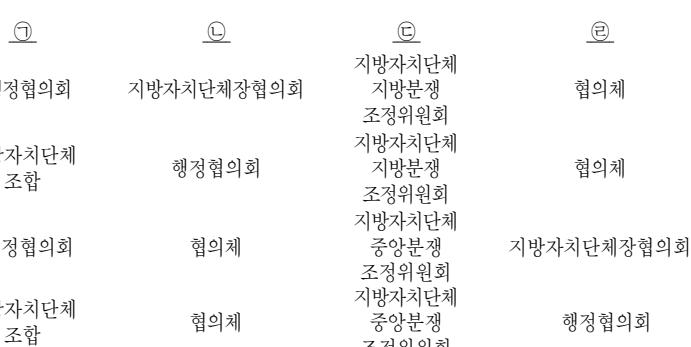
- | | |
|---------------|--------------------------|
| ㄱ. 과학적 관리론 | ㄴ. 종신고용보장 |
|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③) 직위분류제는 그의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아 1923년 직위분류법 제정으로 이어지고, ㄷ의 무질서한 보수체계를 보수의 형평성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되었고, ㄹ의 실적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된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직위분류제는 신분보장의 임의성으로 인해 종신고용보장에는 약점을 작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 **(딱!행정학, 85 : 443)**

문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정답④) ㉠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은 협의체, ㉢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은 공동처리를 위한 행정협의회이다. **(딱!행정학, 774 : 783-785)**

문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주민세·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④) ㉠은 지방소비세(보통세), ㉡은 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은 지방소득세(보통세), ㉣은 지방교육세(목적세)이다. **(딱!행정학, 746, 747)**

문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 ① 계층제
② 규칙과 계획
③ 수직정보시스템
④ 임시작업단(task force)

정답④) ④의 임시작업단(task force)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연결장치에 속한다. **(딱!행정학, 296)**

| 수직적 연결 기제 | 수평적 연결 기제 |
|------------|-------------------|
| ① 계층제 | ① 정보시스템 |
| ② 규칙과 계획 | ② 직접 접촉 |
| ③ 계층직위의 추가 | ③ 임시작업단 |
| ④ 수직정보 시스템 | ④ 프로젝트 매니저(사업관리자) |
| | ⑤ 프로젝트 팀(사업팀) |

문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
|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
|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
|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

-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정답②) 행정통제의 첫 과정은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이어서 정보수집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딱!행정학, 599)**

문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② 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③ 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 ④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 정답①) 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는 높지만, 수직적 전문화는 낮기 때문에

옳지 않다. **(딱!행정학, 293)**

| ☆ 직무 전문화와 과제성격 ☆ | | |
|------------------|---------|---------|
| 수평적 전문화 | | |
| | 높다 | 낮다 |
| 수직적 전문화 | 비숙련 직무 | 일선 관리직무 |
| 전문화 | 전문가적 직무 | 고위 관리직무 |

출처) 윤영진 외, *세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322.

문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 ② 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 ③ 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 ④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답①>①의 보력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교환적 리더십의 특징이기 때문에 틀렸다. **(딱!행정학, 316)**

문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② 부파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 ④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정답④>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란 부패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조직의 보호를 받는 구조화된 부패이다. 관행화된 급행료나 커미션을 받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부패는 제도적 부패에 속한다. 제도화된 부패 상황에서는 ④의 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은 (일상화 되기보다)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틀렸다. **(딱!행정학, 501)**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성-

| | |
|------------------|---|
| 형식주의 | 반부패선언을 대외적으로 표방은 하지만, 조직 내에서는 사실상 위반을 방조·은폐한다. |
| 부파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 반부패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사람이나 부패를 폭로하려는 사람은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다. |
| 부파행위자의 보호 | 부파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대한 처분을 받는 상황이다. |
| 부파의 타성화 | 조직 내의 전반적 관행을 정당화함으로써 집단적으로 죄책감을 해소하며, 강력한 외적 압력이 없는 한 부패를 중단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다. |
| 통제자의 책임회피 | 부패적발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변명하는데 급급하면서 공식적 책임수행을 꺼리는 상황이다. |

문1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 ① 5급 일반직 공무원
- ②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 ③ 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④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②>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과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딱!행정학, 494)**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문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 판단” 여부에 의하여 감사나 통제를 할 수는 없다. **(딱!행정학, 710 : 734)**

| | |
|--------------------------------|---|
|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법 제169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

| | 기관위임사무 | 단체위임사무 | 자치사무 |
|---------|--|---|---|
| | 지방자치법 제102조, 103조 | 개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①항, ②항 |
| 사무성질 | 법령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 개별적 법령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를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사무 |
| 사무예시 | 선거 및 투표 관련사무, 천연기념물 관리 | 보건소 설치(운영·보건소법), 예방접종(전염병예방법), 재해구호, 국세 및 도세 징수, 생활보호 | 가로등 설치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민복지, 공원과 운동장, 초등학교, 지방세, 오물처리 및 청소, 도서관 기타 소방업무 |
| 이해관계 | 전국적 이해관계 | 전국적·지방적 이해관계 | 지방적 이해관계 |
| 지방의회 관여 | × | ◎ | ◎ |
| | 합법적 통제 ◎ | 합법적 통제 ◎ | 합법적 통제 ◎ |
| | 합목적적 통제 ◎ | 합목적적 통제 ◎ | 합목적적 통제 × |
| 중앙의 통제 | 사전·예방적 통제 ◎ | 사전·예방적 통제 × | 사전·예방적 통제 × |
| | 합법적/합목적적/교정적/예방적 감독 모두 가능 | 합법적/합목적적/교정적 감독에 한정(사전·예방적 감독은 배제) | 합법성에 관한 교정적/소극적/사후적 감독에 한정(합목적적/사전·예방적 감독 배제) |
| 경비부담 | 전액 위임기관이 부담(교부금) | 지방과 국가 공동부담(부담금) |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장려적 보조금) |
| 배상책임 | 국가책임 | 국가/지방 공동책임 | 지방책임 |
| 형식 | 규칙 | 조례·규칙 | 조례·규칙 |

문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 ②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③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 ④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정답③>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정보화책임관)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 5의2. 견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문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 ②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 ③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②>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결정 방향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방식이기 때문에 틀렸다. **(딱!행정학, 525)**

문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 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 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 ③ 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 ④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②)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승기법(piggy-backing : 어부바)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기 때문에 틀렸다. 편승기법(piggy-backing)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형시키는 아이디어 내기 기법이다. **(딱!행정학, 179 ; 268)**